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관계기관 향동유치원

내 용

1.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부적정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4(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1항에 따르면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유치원운영위원회 길잡이」(교육부)에 따르면 보고사항의 보고가 끝난 후, 전(前) 회의 회의록을 승인받아 위원장이 회의록 승인을 선포하고, 승인된 회의록에 위원장과 유치원장이 서명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향동유치원에서는 2020~2021학년도 중 개최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규정에서 정해진 내용으로 작성하지 않고, 유치원장과 위원장의 서명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 소집 알립 지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7(회의) 제2항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길잡이」(교육부)에 따르면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향동유치원에서는 2022학년도 중 제1회부터 제3회까지 운영위원회를 개최 하면서 각 위원에게 규정에 따른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미통보

「유치원운영위원회 길잡이」(교육부)에 따르면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회의 종료 후 운영위원회의 장은 유치원장에게 결과를 이송하여야 하고, 회의결과 이송시 본 회의 시 채택한 의견서, 위원장의 이송공문을 함께 첨부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이송하여야 한다.

그런데 향동유치원에서는 2020~2022학년도 중 개최한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유치원의 장에게 문서로 이송하지 않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① 향동유치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합니다.